

[무면허조제] 약사면허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적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법

위 - 무자격자 조제행위의 이익과 무관한 약제비, 치료재료비까지 포함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 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구합623 판결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에 의하여 조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일 뿐이고, 약품재료비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제비(=273,025,390원)와 조제비(=62,503,104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환수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위 273,025,390원 부분에서 위법하다.

나. 판결요지

2) 징수금액이 원고가 실제로 이득을 얻은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품이 환자들에게 투약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조제비 상당액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징수범위는 위 조제비 상당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 또한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품재료비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리

약사 면허 없는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한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함.

따라서,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이에 반하여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

우 조제비뿐만 아니라 약제비 또는 치료재료 상당금액까지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무자격자 행위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부분인 약제비, 치료재료비까지 포함하여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 적법하다고 판결.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구합623 판결

약사변호사, 약사법, 의료법 자문, 형사소송, 행정소송, 실무적 대응전략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